

2019년도 제18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9. 9.(월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7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118건(안전번호 제2019-109195호~110774호)
 - 회의결과: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단편소설 게시물 24개 안전(제2019-110605호, 110606호, 110615호, 110616호, 110618호, 110620호, 110621호, 110628호, 110629호, 110630호, 110631호, 110632호, 110633호, 110637호, 110640호, 110641호, 110643호, 110646호, 110647호, 110657호, 110662호, 110663호, 110665호, 110666호)은 허용되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인지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가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빠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인데 해당 안전들이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리자가 10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8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7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차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109195호~110774호로 총 4,118건임

안전번호 제2019-109195호, 109196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인데, 제2019-109195호는 하나의 게시물에 51개의 직접 링크가 설정되어 있고, 제2019-109196호는 하나의 게시물에 64개의 직접 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과 링크로 연결되는 웹페이지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 설정된 각 링크를 클릭하면 국내 사이트 '카카오티비(kakaotv.daum.net)' 사이트의 영상물(우리말 자막 있음)로 연결됨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와 '카카오티비'에 영상물을 올린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한편 인터넷 링크로 연결되는 불법복제물등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면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에 불과한 해당 링크는 불법복제물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음

국내 사이트에 저장된 불법복제물(이하 '甲'라고 함), 甲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가 설정된 국내 사이트의 웹페이지(이하 '乙'라고 함)가 있는데, 甲, 乙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가 동시에 요청된 경우나 乙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만 요청된 경우 乙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甲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되면 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됨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

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됨

甲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乙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甲과 甲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설정된 다른 게시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됨

즉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甲, 乙에 대해 동시에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乙의 게시자 및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생각건대, 乙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은 이중적이고 과도한 조치에 해당하고, 乙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는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본 건은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에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109195호, 109196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甲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가 이루어 졌는지 질의함

시정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자는 의견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현재 甲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호원이 비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심의 요청을 하고 있다 보니 심의위원회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본 건의 경우 추후 '카카오티비' 내 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 원 복제물에 대하여 추가 심의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설정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 전문위원의 의견에 이해는 하지만 향후 '카카오티비' 내 복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가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 C 위원 : 보호원에서 '카카오티비' 내 복제물에 대하여 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블로그 전체를 신고하였는데, 온라인모니터링 담당팀에서는 블로그에 있는 총 5개 게시물 중 게시물 2개를 특정하여 심의를 요청함
보통 원천이 되는 복제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요청하거나, 링크 게시물과 함께 원천이 되는 복제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음
본 건은 문제의식을 가져볼 수 있음

- C 위원 : 민원인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천이 되는 복제물을 함께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A 위원 : 전문위원님의 의견의 취지는 이해함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甲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후속조치로 담보되지 않는 상태라면 집행에 구멍이 될 것임

- B 위원 : 링크에 대하여 해외 사이트나, 국내 사이트로 연결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심플하게 생각하자는 의견임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하여 연결이 되는 링크에 대하여만 시정권고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 본 건에 대하여 최소한 경고의 시정을 해야 할 것임
 또한 시정권고는 법적효력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고, 추후 甲에 대하여 삭제 전송중단을 요청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甲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조속히 하면 될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일반인들은 乙을 통하여 甲에 접근하기 때문에 甲에 대하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기술적 측면에서 일반인이 DB에 쿼리를 보내 SQL을 이용하여 직접 보기에는 쉽진 않지만, 본 건과 같이 링크로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접

근하기 쉬울 것임

甲은 원천이긴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乙에 접근성을 높이는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제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甲, 乙 둘 다 역할이 크다는 의견임

- A 위원 : 본 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링크 게시물뿐만 아니라 국내 사이트 게시물 甲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가능하다는 것임
- C 위원 : 링크 게시물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판례는 임베디드 링크가 문제된 사안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직접 링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임
- B 위원 :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甲으로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乙을 원천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C 위원 : 본 건 사안만 본다면 과거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의 사안과 비슷한 경우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링크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는 대부분 해외

에 서버가 있는 클라우드서비스 등에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고 그러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이었음

- C 위원 : 본 사안에 대하여는 과거 링크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만, 복제물이 저장된 사이트가 국내 사이트인 경우 향후 심의 대상으로 삼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시정권고의 의견에 동의하며, 중요한 것은 복제물이 저장된 사이트가 국내 사이트인 경우 보호원에서 후속적인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전문위원님의 의견처럼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 원칙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乙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에 대하여 선불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이견 없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9195호, 109196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설정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추후 불법복제물이 국내 사이트에 있는 경우 링크 게시물이 아닌 불법복제물이 심의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시정 조치의 가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09197호, 109198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방송중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09197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서 ‘원피스(1999)’ 애니메이션 900화 전체분량(23분 51초, 우리말 자막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게시물의 재생 횟수는 2019. 9. 3. 기준으로 66,816회임
안전번호 제2019-109198호는 ‘페어리 테일 파이널(2018)’ 47화 전체분량(23분 50초, 우리말 자막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생 횟수는 2019. 9. 3. 기준으로 12,433회임
해당 블로거는 다수의 해외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09197호, 109198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 같은 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2019-109197호, 10919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09199호~109226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Autocad', 'FL Studio'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cracking)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크래킹(cracking)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license key)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무료 체험용 버전 제공 웹페이지를 제시하면서) Autocad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사, FL Studi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이미지라인소프트웨어사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버전(free trial version) FL Studio 프로그램, Autoca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 하는 체험용 프로그램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dead copy)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함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크랙은 압축파일내부에 동봉되어 있습니다”(제2019-109199호, 순번 5번), “제품키txt”(제2019-109210호, 순번 16번), “Autodesk 2020 Keymaker.exe”, “Crack”폴더(제2019-109222호, 순번 28번), “정품 변경법 본문에 있으니 저에게 미칠듯한 쪽지좀 날리지 말아주세요”(제2019-109224호, 순번 30번)와 같은 표현, 파일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 일부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과 함께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09199호~109226호 웹하드 사이트의 'Autocad', 'FL Studio'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금번 안전과 유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 10'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에 대하여 지난 전체위원회(2019. 8. 27. 개최, 제2019-167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9199호~109226호는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0604호~110667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다음 등의 이용자가 이창준(1939. 8. ~ 2008. 7) 작가가 1977년 '문예중앙' 겨울호(준비호)에 발표한 단편소설 '눈길'을 제공한 사안임
 첫 번째 쟁점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신설 전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겠음
 보호원이 하는 시정권고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시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2009. 4. 22.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 2009. 7. 23. 시행)에 신설되었음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133조 제4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음

즉 2009. 7. 23. 이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삭제 명령 제도만 있었을 뿐 시정권고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었음

2009. 7. 23. 전에 업로드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불법복제물을 온라인에 업로드한 즉시 전송권침해의 기수가 될 뿐 아니라 범죄의 종료까지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 즉 전송권침해가 우리 형법의 ‘즉시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본 건 전송행위가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것임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에 해당함

다만 전송권침해가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판례나 학술문헌은 찾지 못하였음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업로드된 침해 저작물이 인터넷상에 존속하는 동안은 여전히 이용에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속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음

위 판결은 불법복제물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전송권침해가 기수에 도달할지는 몰라도 범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임

설령 형사법적으로 전송권침해 행위가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저작권법 제133조의3이 신설되기 전 업로드 된 불법복제물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요컨대, 2009. 7. 23. 전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

저작권법에 시정권고 제도를 마련한 입법자의 의도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원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이고 저작권법위반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임

본 건 저작물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관리저작물로 확인되는데, 위 신탁단체나 출판사, 저작자의 유족 등은 2002년 내지 2009년에 업로드 된 본 건 심의대상 게시물에 관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나아가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한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입하여야 할 것임

보호원이 권리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단편소설 복제물을 모니터링 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행위가 효율적인 저작권보호 업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게시일자가 정리된 표를 제시하면서)제2019-110605호, 110615호, 110616호, 110618호, 110620호, 110621호, 110628호, 110629호, 110630호, 110631호, 110632호, 110633호, 110640호, 110643호, 110646호, 110647호, 110657호, 110662호, 110663호, 110665호, 110666호(21개 안건)는 모두 시

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복제물임
두 번째 쟁점으로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커뮤니티 내 게시물에 대한 시
정권고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겠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네이버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
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여 왔음

한편 전체심의위원회(2019. 4. 26. 개최, 제50회)에서는 밴드를 통한 불법
복제물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심의위원회는 네이버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바 있음

네이버 밴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입장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에서
단편 소설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아래 3개 안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정리된 입장이 제2019-110606호, 110637호, 110641호
3개 안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당시 전문위원은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
리, 소규모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한 보호원의 모니터링은 지양되어야 하
고, 그러한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에 부결하여 한다고 검토, 보고하였으나, 오
늘 심의에서는 전문위원 개인 의견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정리된 입장에
따라 보고하게 되었음

(카페명과 회원수 정보를 제시하면서)제2019-110606호의 카페명은 ‘★★
★★★★★★’이고 그 회원수가 15명이고, 제2019-110637호는 카페명
이 ‘☆☆☆☆☆☆’로 회원수는 121명임

제2019-110641호는 카페명이 '●●●●●'로 회원수가 21명임

특히 제2019-110640호는 게시일자가 2002. 11. 3.이고, 해당 카페의 회원수는 10명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10604호~110667호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복제물 21개 안전에 대하여 질의함
- C 위원 : 먼저 10년 이상 방치된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복제물은 민원인 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호원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안전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 신고 없이 보호원의 온라인모니터링 담당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C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공중송신권 침해는 '계속범'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10년 전 게시된 것에 대하여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무엇보다도 권리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단편소설 복제물을 모니터링 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행위가 행정력의 낭비에 해당하고, 실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업무수행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안전은 예컨대 내일모레 철거되어야 하는 집에 가서 소방안전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과 비슷해 보임
- C 위원 : 권리자는 회원 수가 작은 폐쇄성이 있는 카페에 불법복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을 것임
- B 위원 : 게시자는 게시일자를 바꿔서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게시일자만 보고 부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 A 위원 : 단편소설 '눈길'을 제공한 게시물과 관련한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금번 심의 안전에는 단편소설 '눈길'을 제공한 게시물이 많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수능 학원 강사들이 올리는 경우가 있고 소설가 지망생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경우도 있음
- B 위원 : 민원인 신고 없이 보호원에서 모니터링 했다고 하는데, 안전 표에 '[중점]'이라고 표시된 것은 불법복제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는 매달 중점 보호 저작물을 선정하여 채택모니터링 요원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점' 표시는 중점 보호 저작물을 의미함

보호원이 어떤 이유로 '눈길'을 중점 보호 저작물로 지정한 것인지는 제가 알지 못함

- B 위원 : 보호원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구글에서 저작물명 '눈길'을 검색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을 조사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커뮤니티 내 게시물에 대하여 과거 전체심의위원회(2019. 4. 26. 개최, 제50회)에 논의된 내용을 질의함
- B 위원 : 소규모 카페와 비슷한 네이버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기억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제50회 전체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면서)종전에는 사생활의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밴드의 폐쇄성 등을 기준으로 시정권고 가부를 의결했었는데,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기준에 관계없이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입장이 정리되었음
전문위원은 지금도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밴드 내 불법복제물에 대한 보호원의 시정권고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A 위원 : 전체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특히 SNS는 특성상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매체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적극적인 신고 행위에 의한 제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의 의견이 있음
전체적인 취지는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호원이 하는 모니터링은 사찰의 개념으로 보일 수 있음

또한 전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점 현재 네이버 밴드에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오늘 심의에서 문제가 되는 카페와 네이버 밴드 게시물 사이에는 첨부파일 제공 기간의 차이점이 있음
밴드 게시물의 첨부파일은 30일 동안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다운로드가 되지 않음
- C 위원 :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커뮤니티 내 게시물 제2019-110606호, 110637호, 110641호에 대하여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A 위원 : 지난 전체심의위원회(2019. 4. 26. 개최, 제50회)에 불참하여 의견을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네이버 밴드의 경우 밴드명 자체가 불법 복제물 공유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거나, 밴드명은 그렇지 않지만 가입된 회원수와 복제물이 공유된 횟수가 많은 경우 네이버 밴드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자는 의견이었음
- B 위원 : 네이버 밴드를 보호원이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야 함
지난 전체심의위원회(2019. 4. 26. 개최, 제50회) 의견 중에는 밴드명 자체가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예컨대 친

목 모도의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명 자체가 'OO동창회'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폐쇄적 성격이 강한 온라인 상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함

- A 위원 : 네이버 밴드에 대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온 경우와 들어오지 않는 경우의 분리가 필요해 보임
- B 위원 : 금번 심의 안건은 네이버 밴드가 아닌 사이트인데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등인 것 같음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의 성격이 같음을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네이버 밴드의 폐쇄성 등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에 밴드에서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네이버 밴드의 경우 회원수의 많고 적음, 성격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임
문제가 되는 해당 심의 안건(총 24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입장을 질의함
- A 위원 :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커뮤니티 내 게시물 관련하여 안건번호 제2019-110637호 다음 카페명은 '☆☆☆☆☆☆☆☆'인데 카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준회원 이상 읽기'라고 되어있는바 심의안건 게시글은 회원가입 후 준회원이 되면 접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해당 카페는 비공개로 전제로 하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보임

- C 위원 : 재택모니터링 요원은 위와 같은 게시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카페 회원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는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구글링을 통해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음
구글링 후 해당 카페에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채증을 하였을 가능성이 큼
- A 위원 : 보호원은 모니터링 업무를 함에 있어서 폐쇄적 성격의 사이트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음
친목 위주의 카페나 네이버 밴드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모니터링을 하지 말아야 하고, 시정권고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위 문제가 되는 3개 안전에 대하여 폐쇄적 성격의 사이트라는 점,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위원 : 논의가 되고 있는 총 24개 안전에 대하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다시 보여줄 것을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0605호, 110616호, 110618호, 110620호, 110621호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것임
블로그의 경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함
나머지 안전은 모두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복제물로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인데 해당 주소를 입력해 접속해보면 일부는 비공개 카

폐임을 확인할 수 있음

- A 위원 : 시정권고 제도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것이 시정권고 제도 취지인 점, 위 안전들은 대부분 폐쇄적 성격의 사이트라는 점,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권리자의 이용승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과거 시정권고는 블로그의 경우, 홍보·광고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기억함
- B 위원 : 해당 안전들은 보호원에서 선정한 '중점' 저작물인데, '중점' 저작물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문위원과 심의팀 직원들은 보호원의 모니터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함
다만 보호원 내부 규정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출판물은 "출간 3개월 이내 또는 주·월간 베스트셀러 1~50위"가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됨
- B 위원 : 지난 제3분과위원회(2019. 3. 25. 개최, 제2019-21회)에서는 개인 블로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시(詩) 저작물에 대하여 해당 블로그에서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약 4,000편의 시, 시조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함
이와 같이 개인 블로그에 대하여는 해당 건보다 블로그의 성격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임

- A 위원 : 문제가 되는 총 5개 블로그는 2008년도가 마지막 게시글인 것으로 봐서는 현재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아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10647호는 2002. 4. 22. 게시된 것이고, 카페지기는 부재중으로 되어있음
 마찬가지로 안전번호 제2019-110657호는 2002. 10. 11. 게시되었고, 카페지기는 부재중임
- A 위원 : 해당 카페를 접속하여 마지막 게시물이 언제인지 보여달라고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110657호의 카페를 접속하면서)현재 회원 수는 32명이며, 2008. 6. 21. 마지막 게시물이 업로드됨
- A 위원 : 위 카페는 상습성적으로 복제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1~3개의 복제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이트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포함된다고 봐서 저작권 보호원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B 위원 : 본 심의 안전에 대하여 관리자가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논의가 되었던 24개 안전에 대하여 관리자가 10년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게시판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

결의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한된 행정자원의 비효율적인 투입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중점 저작물 선정 기준이나 보호원의 모니터링 방향 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B 위원 :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밴드와 같이 폐쇄적 성격이 강한 사이트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부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블로그를 통해 게시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 저작권자 등 권리자에 의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가결의 의견임
- A 위원 : 네이버 블로그 5개 안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오래전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 결과물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권리자의 이용승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또한 보호원에서 어떤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 하는 인식이 생길 것임 보호원에 문제가 되는 사이트의 전체 게시물에 대하여 완벽하게 시정 권고가 되지 않는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예상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우려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안전들은 ‘계속범’의 규정과 달리 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B 위원 : 소수 의견으로, 네이버 블로그 안전 총 5개(안전번호 제 2019-110605호, 110616호, 110618호, 110620호, 110621호)는 블로그를 통해 게시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
위 24개 안전 중 네이버 블로그 총 5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보임
다수 위원의 입장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단편소설 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것이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한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09227호~110774호((출판)눈길' 24건 제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어문, 게임,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방송 '60일, 지정생존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09595호는 모바일 웹하드에 게시된 것이고,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원작으로 하여 리메이크한 국내 드라마임
(방송 'WATCHER'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0960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이고, 해당 드라마는 OCN채널에서 2019. 7. 6. ~ 2019. 8. 25.(16부작) 방송됨
(방송 '미스터기간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09621

호는 OCN채널에서 2019. 7. 17. ~ 2019. 9. 5.(16부작) 방송된 국내 드라마임

(출판 '달빛조각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9686호는 밴드에 게시된 것이고, 출판사 로크미디어에서 출판한 어문 저작물임

(출판 '회귀자 사용설명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9715호는 밴드에 게시된 것이고, 출판사 위시북스에서 출판한 어문 저작물임

저작물명은 하나로 되어있지만 5개의 텍스트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밴드를 제시하면서)밴드 명을 보면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영화 '봉오동 전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9890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2019. 8. 7. 개봉한 최신 국내 영화임

(영화 '레드슈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0127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2019. 7. 25. 개봉한 최신 국내 영화임

(음악 '날라리(LALALAY)(가수: 선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0185호는 보호원이 설정한 저작물명은 '날라리(LALALAY)(가수: 선미)'로 되어 있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약 100개의 최신 음원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109227호~110774호(앞서 부결하기로 의결한 (출판)‘눈길’ 24건 제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110605호, 110606호, 110615호, 110616호, 110618호, 110620호, 110621호, 110628호, 110629호, 110630호, 110631호, 110632호, 110633호, 110637호, 110640호, 110641호, 110643호, 110646호, 110647호, 110657호, 110662호, 110663호, 110665호, 110666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19-109195호~110774호(위 24개 안전 제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8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8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16.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